

2017년

법인지방소득세 신고·납부안내

12월말 결산 법인의 '16년 귀속 법인소득



법인지방소득세 개요



과세대상

법인소득(각 사업연도 소득, 토지 등 양도소득, 미환류소득, 청산소득)



납세의무자

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

구분	내국법인	외국법인
과세범위	국내 · 외 소득 모두	국내 원천소득만



과세표준 및 세율

「지방세법」 제103조의20

과세표준	속산법		세법상 계산법
	세율	누진공제액	
2억원 이하	1%	-	과세표준 × 1%
2억원 초과 ~ 200억원 이하	2%	200만원	200만원 + (2억원 초과 × 2%)
200억원 초과	2.2%	4,200만원	3억9,800만원 + (200억원 초과 × 2.2%)



신고 · 납부기한

구분	신고 · 납부 기한
내국법인	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(제103조의23)
연결법인	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(제103조의37)
수정신고, 세무서 결정 · 경정	법인세 수정신고(세무서 결정 · 경정 포함)와 동시(제103조의24) ※ '13년도 귀속분까지는 법인세 수정신고일, 결정 · 경정 고지서의 납부기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· 납부



납세지

• 각 사업장 소재지(종업원 수, 건축물 연면적 1:1 기준 안분)

각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비율대로 신고·납부

※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소재지

〈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계산식〉

$$\left[\left(\frac{\text{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수}}{\text{법인의 총 종업원수}} \right) + \left(\frac{\text{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}}{\text{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}} \right) \right] \div 2$$

• 안분신고 관련 안내

각사업장 인적 설비(종업원) 또는 물적 설비(건축물 등)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

종업원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국외근무자는 제외

건축물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

※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 영위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모든 사업장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신고납부



신고시 제출서류

분류	종류
신고서	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(43호) ※ 안분신고서 폐지
첨부 서류	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43호의2)
	안분명세서(44호의6)
	공제(감면)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(43호의3)
	가산세액 계산서(43호의4)
	특별징수세액명세서(43호의5)
	재무상태표
	포괄손익계산서
	이익잉여금처분(결손금처리)계산서
	현금흐름표 →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제출
	소급공제 환급신청서(43호의9) → 소급공제 대상 법인만 제출

※ 특별징수세액을 본점 소재 자치단체에서 일괄 환급 신청시 특별징수명세서(42호의4) 제출 필요

특별징수세액(기납부세액) 안분방법



총부담세액 ≥ 특별징수세액(기납부세액)

기납부세액을 사업장별로 안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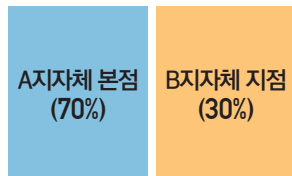
사례

총부담세액 10,000원, 특별징수세액 4,000원,
본점 A(70%), 지점 B(30%), 특별징수지 C, D

<총부담세액>



<기납부세액>



↑
↓
각사업장에
안분신고

↑
↓
차감 납부할
세액
(안분 납부)

- 납세자의 총부담세액
만큼만 특별징수세액을
안분하여 각 사업장별
기납부세액으로 차감

구분	사업장		특별징수지	
	A지자체(70%)	B지자체(30%)	C지자체	D지자체
총부담세액	10,000원		2,000원	2,000원
안분세액	7,000원	3,000원		
기납부 세액	총액	4,000원		
	안분	2,800원	1,200원	
차감납부할세액	4,200원	1,800원		





총부담세액 < 특별징수세액(기납부세액)

총부담세액에 상당하는 기납부세액은 안분, 초과분은 본점가산

사 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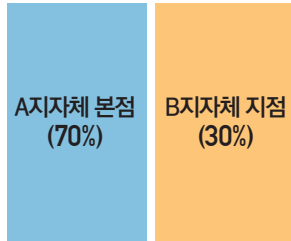
총부담세액 10,000원, 특별징수세액 31,000원,
본점 A(70%), 지점 B(30%), 특별징수지 C, D

<총부담세액>



10,000원

<기납부세액>



A지자체 본점
(70%)

B지자체 지점
(30%)

↑
↓
각사업장에
안분신고



21,000원

↑
↓
환급대상액
(본점 일괄
환급)

- 납세자의 총부담세액만큼만 특별징수세액을 안분하여 각사업장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
- 차감 후 남은 특별징수 환급대상액(특별징수세액-총부담세액)을 본점(주사무소)의 기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

구 분	사업장		특별징수지	
	A지자체(70%)	B지자체(30%)	C지자체	D지자체
총부담세액	10,000원		10,000원	21,000원
안분세액	7,000원	3,000원		
기납부 세액	총 액	31,000원		
	안분대상액	10,000원(총부담세액 상당액)		
	안 분	7,000원	3,000원	
	본점가산	21,000원 (31,000원-10,000원)		
	소 계	28,000원	3,000원	
차감납부할세액	-21,000원		0	

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내용



	'16년까지	▶▶	'17년부터
안분신고서	제출	▶▶	제출 불필요 (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제출)
안분명세서	모든 법인 제출	▶▶	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제출
안분오류에 대한 수정신고	가산세 면제	▶▶	가산세 부과 (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한 개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)
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첨부서류	일반법인과 동일	▶▶	첨부서류 면제 (재무제표, 세무조정계산서)
경정청구	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별 신청	▶▶	본점 소재지 자치단체만 신청 (과세표준 경정)
분식회계에 따른 환급	즉시 환급	▶▶	5년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후 남은금액만 환급



신고·납부시 유의사항



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·납부

- 동일 특·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(區)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일괄 신고·납부
※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을 경우 ①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, ②안분율이 가장 큰 사업장
- 안분 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

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

- 사업장이 여러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「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」를 자치단체마다 각각 제출 ('17년부터 「안분신고서」 폐지)
- 하나의 자치단체(시·군·구)에만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안분명세서 제출 불필요
-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,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
※ 「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」의 경우는 첨부서류(재무제표, 세무조정계산서) 제출 면제

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·감면은 없음

- 법인세를 세액공제 또는 감면 받은 법인도 법인지방소득세는 「지방세법」 및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 불가
- 다만,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 가능(0.9%, 1.2%)

수정신고는 자치단체 결정·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

- '14년 이후 사업연도 귀속분부터는 법인세 수정신고시 법인지방소득세도 지자체에 수정신고해야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
※ '13년도 귀속분까지는 법인세 수정신고일, 결정·경정 고지서의 납부기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인세 납부세액(가산세 포함) 10%를 신고납부

위택스(www.wetax.go.kr)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가능

- 지방소득세 전자신고 등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 참고



2017년
법인지방소득세
신고·납부안내



행정자치부

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(세종로)

행정자치부 콜센터 02-2100-3399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www.moi.go.kr